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재나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피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울, 이영대, 이보미, 김희성

피고(재심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2.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1. 선고 2013나18225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19,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0. 12. 2. 18:40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삼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버스와 같은 차로에서 원고 버스를 뒤따라가다가 원고 버스의 왼쪽으로 원고 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과정에서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공제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2011. 2.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3429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5. 각하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다음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책임공제금(치료비)으로, 2011. 2. 25. 1,948,890원, 2011. 3. 9. 350,000원, 2011. 4. 19. 558,600원, 2011. 6. 9. 23,150원, 2011. 6. 16. 762,000원, 2011. 6. 23. 96,450원, 2011. 7. 6. 80,000원 등 합계 3,819,09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이 법원은 2014. 3. 18. 2013나18225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2019. 7. 5.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18297호로 추후보완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가 ‘서울 영등포구 F, 3층 G호’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이를 넘겨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557호)을 송달받은 날인 2014. 9. 12. 또는 늦어도 피고가 추완상고를 제기한 날인 2019. 7. 5.에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그로부터 30일의 제소 기간이 훨씬 경과한 2021. 4. 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사유를

내세우는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일체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어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6조의 재심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또한, 피고가 상소에 의하여 이미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허용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소에 대한 재심사유는 당연히 상고이유가 되므로(대법원 1962. 8. 2. 선고 62다2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제한은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이유로 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액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드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액사건에서는 대리권 흠결을 추완상고의 사유로 삼아 상고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외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관하여 다룰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일체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를無理하게 앞지르기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합계액 3,819,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여부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 판결 등),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일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데에만 미칠 뿐 변론종결일 이전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로 2011. 2. 25. 1,948,890원, 2011. 3. 9. 350,000원, 2011. 4. 19. 558,600원, 2011. 6. 9. 23,150원, 2011. 6. 16. 762,000원, 2011. 6. 23. 96,450원, 2011. 7. 6. 80,000원 등 합계 3,819,0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인 2011. 12. 8.이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이전의 권리관계인 피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서울강남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를 뒤따라가던 피고 오토바이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원고 버스와 원고 버스 왼쪽에 설치된 안전봉 사이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원고 버스의 바퀴와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버스로서는 후방에서 불법적으로 앞지르기하려는 차량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더욱이 원고 버스의 왼쪽에는 안전봉과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후행 차량이 안전봉과 원고 버스의 사이의 좁은 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예상하였더라도 원고 버스가 피고의 오토바이를 쉽게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버스의 운전자가 원고 버스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리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으며, 원고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합계 3,819,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선고일인 2014.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재심청구는 제460조에서 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청구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현, 판사 김창현, 판사 강영훈

1) 원고는 재심소장에서 ‘제5호, 제7호, 제9호, 제11호’에 표시를 하여 두었으나, 재심사유로는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점을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 자체도 재심사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제3호와 제11호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설회한다.

2) 만일, 사고 발생 당시부터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한다면,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